

2-50 프락토올리고당

1) 제조기준

(1) 원재료 및 제조방법

(가) 설탕분자에 1개에서 3개의 과당분자가 β -1,2 결합된 올리고당류로서 설탕을 녹여서 당액을 만든 후 전이효소 또는 전이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

(나) 이눌린(inulin)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여야 함

(2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: 프락토올리고당을 410 mg/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, 프락토올리고당은 1-케이스토즈(GF2), 니스토즈(GF3), 프락토피라노실니스토즈(GF4)를 합한 량으로 계산함

2) 규격

(1) 성상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·이취가 없어야 함

(2) 프락토올리고당

(가) 원료성 제품: 표시량 이상

(나) 최종제품: 표시량의 80~120%

(3) 납(mg/kg): 1.0 이하

(4) 대장균군: 음성

3) 최종제품의 요건

(1) 기능성 내용: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(2) 일일섭취량

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~8 g

(3) 섭취 시 주의사항

(가) 섭취 시 가스참, 트림, 복통,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(나)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

4) 시험법

(1) 성상: 제 4. 2-7 성상시험법

(2) 프락토올리고당: 제 4. 3-31 프락토올리고당

(3) 납: [별표 4] 참조

(4) 대장균군: [별표 4] 참조